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2025. 12. 8.)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복지 도시 위원회



## 목 차

### [보건소 소관]

◆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I	제안 개요	1
---	-------	---

II	2026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	--------------------	---

III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7
-----	------------------------	---

- ① 세입·세출 총괄 현황
- ② 일반회계 세입현황
- ③ 일반회계 세출현황
- ④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⑥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현황

IV	2026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1
----	----------------------	----

V	검토결과(검토의견)	23
---	------------	----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153
	25-154

## I . 제안 개요

###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소)

나. 제 출 일 : 2025. 11. 14.

다. 회 부 일 : 2025. 11. 18.

### 2.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II. 2026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마포구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한 총 8,746억 9,778만 8천원이며, 재정자립도<sup>1)</sup>는 30.21%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으며, 재정자주도<sup>2)</sup>는 47.02%로 전년대비 1.43% 높아졌음.
  - 일반회계는 8,385억 2,757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4.13% 증가함.
  - 특별회계는 361억 7,021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2.85% 증가함.
- 기금운용계획안은 1,155억 1,278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5,729만 8천원이 감소함.

1)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총규모

2) 재정자주도 = 자체재원 + 보조금 제외한 의존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일반회계 총규모

## 가. 2026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26 예산액	2025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74,697,788	837,332,273	37,365,515	4.46%
일반회계	838,527,572	805,280,245	33,247,327	4.13%
특별회계	36,170,216	32,052,028	4,118,188	12.85%
의료급여기금	793,426	663,164	130,262	19.64 %
마포농수산물시장	11,151,737	6,558,857	4,592,880	70.03 %
주차장	20,870,143	23,664,688	△2,794,545	△11.8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2,599	569,848	△487,249	△85.51 %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2,497,948	0	2,497,948	순증
건축안전	774,363	595,471	178,892	30.04 %

## 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구 분	2025년도말 조성액 (d=a+b-c)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a)	증 감 (e=d-a)
		수입⑥	지출⑦		
합 계	92,623,297	22,889,486	17,402,772	98,110,011	5,486,714
1 남북교류협력기금	650,562	27,300	77,500	600,362	△50,200
2 고향사랑기금	395,112	154,735	0	549,847	154,735
3 재난관리기금	7,371,816	2,046,668	431,404	8,987,080	1,615,264
4 자활기금	1,661,213	59,210	74,010	1,646,413	△14,800
5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662,707	323,223	281,341	704,589	41,882
6 양성평등기금	2,248,659	75,000	191,600	2,132,059	△116,600
7 중소기업육성기금	4,648,119	2,501,671	5,000,800	2,148,990	△2,499,129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864,173	9,315,441	6,072,343	23,107,271	3,243,098
9 공유재산관리기금	36,162,086	1,742,022	3,500	37,900,608	1,738,522
1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945,267	44,800	43,200	946,867	1,600
1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184,276	230,100	298,589	1,115,787	△68,489
12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11,468,115	4,457,620	2,697,501	13,228,234	1,760,119
13 옥외광고발전기금	1,624,968	362,000	325,879	1,661,089	36,121
14 도로굴착복구기금	1,518,808	1,357,844	1,304,600	1,572,052	53,244
15 식품진흥기금	2,217,416	191,852	600,505	1,808,763	△408,653

## 2. 세입·세출예산 현황

###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b>총 계</b>	<b>838,527,572</b>	<b>805,280,245</b>	<b>33,247,327</b>	<b>4.13%</b>
지방세수입	184,414,741	171,255,862	13,158,879	7.68%
세외수입	68,959,536	63,542,390	5,417,146	8.53%
지방교부세등	15,700,000	11,536,000	4,164,000	36.10%
조정교부금등	125,274,623	120,876,509	4,398,114	3.64%
보조금	376,741,310	357,923,572	18,817,738	5.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437,362	80,145,912	△12,708,550	△15.86%

###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 감	증감률
<b>총 계</b>	<b>36,170,216</b>	<b>32,052,028</b>	<b>4,118,188</b>	<b>12.85%</b>
세외수입	21,795,910	23,293,613	△1,497,703	△6.43%
경상적세외수입	16,828,373	17,186,059	△357,686	△2.08%
임시적세외수입	43,735	42,188	1,547	3.6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908,624	4,779,400	△870,776	△18.22%
지난연도 수입	1,015,178	1,285,966	△270,788	△21.06%
조정교부금등	1,900,000	0	1,900,000	순증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900,000	0	1,900,000	순증
보조금	752,050	663,164	88,886	13.40%
국고보조금등	378,460	331,582	46,878	14.14%
시·도비보조금등	373,590	331,582	42,008	12.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722,256	8,095,251	3,627,005	44.80%
보전수입등	5,650,275	409,103	5,241,172	1281.14%
내부거래	6,071,981	7,686,148	△1,614,167	△21.00%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85억 2,757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52억 8,024만 5천원보다 4.13%, 332억 4,732만 7천원 증액 편성됨.

- 지방세 수입은 작년 대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공시지가 상승,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 증가 등에 의해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증가로 7.68% 증가한 1,844억 1,474만 1천원이고,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53% 증가된 689억 5,953만 6천원임.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및 수수료수입은 감소하는 전망이나,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은 증가 추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세액의 증가,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중 변상금, 과태료 및 부담금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표준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전년 대비 36.10% 증가된 157억원임.
- 조정교부금등은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3.64% 증가된 1,252억 7,462만 3천원임.
- 보조금은 국 · 시비 분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26% 증액된 3,767억 4,131만원임.
- 아울러,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내부거래의 감소로 전년 대비 △15.86% 감소된 674억 3,736만 2천원임.
  -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5년도 예산보다 12.85%, 41억 1,818만 8천원 증액된 361억 7,021만 6천원을 편성 요청함.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43% 감소된 217억 9,591만원이고,
- 조정교부금등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으로 19억 원이 순증됨.

-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13.40% 증가된 7억 5,205만원임.
- 아울러,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44.80% 증가된 117억 2,225만 6천원임.

####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38,527,572	100.00%	805,280,245	100.00%	33,247,327	4.13%
인건비	143,806,122	17.15%	135,097,067	16.78%	8,709,055	6.45%
물건비	50,399,370	6.01%	51,215,661	6.36%	△816,291	△1.59%
경상이전	607,580,802	72.46%	568,802,772	70.63%	38,778,030	6.82%
자본지출	30,192,253	3.60%	41,913,992	5.20%	△11,721,739	△27.97%
내부거래	1,992,006	0.24%	3,248,049	0.40%	△1,256,043	△38.67%
예비비및기타	4,557,019	0.54%	5,002,704	0.62%	△445,685	△8.91%

####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6,170,216	100.00%	32,052,028	100.00%	4,118,188	12.85%
인건비	3,174,130	8.78%	3,090,833	9.64%	83,297	2.69%
물건비	5,456,250	15.08%	4,870,871	15.20%	585,379	12.02%
경상이전	16,472,525	45.54%	14,455,534	45.10%	2,016,991	13.95%
자본지출	2,082,114	5.76%	1,777,429	5.55%	304,685	17.14%
융자및출자	500	0.00%	500	0.00%	0	0.00%
내부거래	8,459,875	23.39%	7,561,118	23.59%	898,757	11.89%
예비비및기타	524,822	1.45%	295,743	0.92%	229,079	77.46%

-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8,746억 9,778만 8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25년도 예산안 대비 4.13%, 332억 4,732만 7천원 증액된 8,385억 2,757만 2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25년도 예산안 대비 12.85%, 41억 1,818만 8천원 증액된 361억 7,021만 6천원을 편성 요청함.
- 세출예산은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는데,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의 경직성 예산이 소폭 증가함과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면서 증액한 반면, 예비비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면서 예비비 예산이 감소하였음.

### III.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 1. 세입·세출 총괄현황

##### 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9,632,227	17,904,786	1,727,441	9.65%
일반회계	19,632,227	17,904,786	1,727,441	9.65%
특별회계	-	-	-	-

- 202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96억 3,22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478만 6천원 대비 9.65%, 17억 2,744만 1천원 증가된 규모로서 마포구 전체 세입예산의 2.24%에 해당함.

##### 나. 세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2,056,527	28,989,858	3,066,669	10.58%
일반회계	32,056,527	28,989,858	3,066,669	10.58%
특별회계	-	-	-	-

-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20억 5,65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9억 8,985만 8천원 대비 10.58%, 30억 6,666만 9천원이 증액됨. 이는 마포구 전체 세출예산의 3.66%를 차지하고 있음.

## 2. 일반회계 세입현황

### 가.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9,632,227	17,904,786	1,727,441	9.65%
세외수입	178,001	178,379	△378	△0.21%
경상적세외수입	86,169	91,947	△5,778	△6.28%
수수료수입	86,169	90,758	△4,589	△5.06%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91,832	86,432	5,400	6.25%
과징금	22,692	22,692	0	0.00%
과태료	69,140	63,740	5,400	8.47%
보조금	19,454,226	17,726,407	1,727,819	9.75%
국고보조금등	7,564,269	6,709,275	854,994	12.74%
국고보조금등	7,564,269	6,709,275	854,994	12.74%
시 · 도비보조금등	11,889,957	11,017,132	872,825	7.92%
시 · 도비보조금등	11,889,957	11,017,132	872,825	7.92%

- 보건소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이며 이 중 ‘시 · 도비보조금등’은 118억 8,995만 7천원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의 60.5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1억 7,800만 1천원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의 0.91%의 비중임.
- 재원별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로 구분되며, 전년 대비 △0.21%, △378만원 감소되었음. 진료비 등 각종 수수료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의약과의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가 전년 대비 증가함.
- 보조금은 194억 5,422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9.75%, 17억 2,781만 9천원 증가하였음. 이는 정부의 ‘정신건강’ 사업과 서울시 보조사업인 ‘모자보건사업’, ‘임신지원사업’ 등 시 · 도비 보조금 가내시액 증가에 따른 것임.

## 나.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총 계	19,632,227	17,904,786	1,727,441
보건행정과	2,954,596	2,624,716	329,880
위생과	525,397	555,547	△30,150
건강동행과	15,946,736	14,501,665	1,445,071
의약과	205,498	222,858	△17,360

-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수수료는 감소하였지만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3억 2,988만원 증액된 29억 5,459만 6천원임.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정신보건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가내시액 증가분이 반영된 것임.
- **위생과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시·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015만원 감액된 5억 2,539만 7천원임.
- **건강동행과는**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사업별 기금의 증가와 난임 및 출산 지원 관련 시·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14억 4,507만 1천원 증가한 159억 4,673만 6천원이 편성됨.
- **의약과는** 전년 대비 △1,736만원 감소한 2억 549만 8천원을 편성함. 이는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등의 사업 축소로 국고보조금 △1,083만 6천원, 기금 △99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6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3. 일반회계 세출현황

#### 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단위:천원) 증감률
총 계	32,056,527	100.00%	28,989,858	100.00%	3,066,669	10.58%
인건비	4,341,763	13.54%	4,110,028	14.18%	231,735	5.64%
물건비	1,444,469	4.51%	1,501,901	5.18%	△57,432	△3.82%
일반운영비	1,149,405	3.59%	1,178,751	4.07%	△29,346	△2.49%
여비	144,474	0.45%	169,040	0.58%	△24,566	△14.53%
업무추진비	71,090	0.22%	71,710	0.25%	△620	△0.86%
재료비	79,500	0.25%	82,400	0.28%	△2,900	△3.52%
경상이전	26,218,176	81.79%	23,244,527	80.18%	2,973,649	12.79%
일반보전금	2,771,354	8.65%	2,005,635	6.92%	765,719	38.18%
포상금	8,500	0.03%	7,600	0.03%	900	11.84%
연금부담금등	402,702	1.26%	420,851	1.45%	△18,149	△4.31%
배상금등	500	0.00%	1,000	0.00%	△500	△50.00%
민간이전	18,385,844	57.35%	17,200,493	59.33%	1,185,351	6.89%
자치단체등이전	4,649,276	14.50%	3,608,948	12.45%	1,040,328	28.83%
자본지출	52,119	0.16%	133,402	0.46%	△81,283	△60.93%
자산취득비	52,119	0.16%	110,870	0.38%	△58,751	△52.99%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0억 5,652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6,666만 9천원, 10.58%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은 경상이전의 일반보전금이 전년 대비 38.18%, 7억 6,571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이 전년 대비 28.83%, 10억 4,032만 8천원 증액 편성함. 반면 배상금등은 전년 대비 △50%, △500만원 감액되었음. 또한 자본지출의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52.99%, △5,875만 1천원 감액되었음.

## 나.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2,056,527	100.00%	28,989,858	100.00%	3,066,669	10.58%
보건행정과	5,066,305	15.80 %	4,405,578	15.20 %	660,727	15.00%
위생과	965,270	3.01 %	957,406	3.30 %	7,864	0.82%
건강동행과	24,649,625	76.89 %	22,301,395	76.93 %	2,348,230	10.53%
의약과	1,375,327	4.29 %	1,325,479	4.57 %	49,848	3.76%

## 다.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 1) 보건행정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보건행정과	5,066,305	4,405,578	660,727	15.00%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4,849,128	4,232,727	616,401	14.56%
보건소 기능 강화	1,768,262	940,959	827,303	87.92%
통합민원서비스	133,661	147,877	△14,216	△9.61%
건강도시 조성	6,660	14,050	△7,390	△52.60%
지역사회건강조사	69,916	69,932	△16	△0.0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12,000	150,000	△38,000	△25.33%
암조기검진사업	1,257,525	300,600	956,925	318.34%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180,000	250,000	△70,000	△28.00%
건강증진사업관리	8,500	8,500	0	0.00%
감염병 관리	612,636	918,920	△306,284	△33.33%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29,955	213,333	16,622	7.79%
결핵검진사업	8,860	9,780	△920	△9.41%
감염병 예방관리	24,112	47,392	△23,280	△49.12%
방역소독	329,709	346,304	△16,595	△4.79%
말라리아 퇴치사업	20,000	20,000	0	0.00%
정신건강관리	2,468,230	2,372,848	95,382	4.02%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270,000	250,000	20,000	8.0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59,220	36,884	22,336	60.56%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1,000	21,000	0	0.00%
자살 유족 지원사업	50,400	52,756	△2,356	△4.47%
정신보건사업	861,470	891,080	△29,610	△3.3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01,540	158,128	43,412	27.45%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560	22,000	△1,440	△6.55%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46,000	146,000	0	0.00%

(단위:천 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737,540	795,000	△57,460	△7.23%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96,000	0	96,000	순증
마음상담소 설치 운영	4,500	0	4,500	순증
행정운영경비	217,177	172,851	44,326	25.64%
인력운영비	95,642	44,100	51,542	116.88%
인력운영비(보건소장실)	50,745	44,100	6,645	15.07%
인력운영비(마음상담소)	44,897	0	44,897	순증
기본경비	121,535	128,751	△7,216	△5.60%

- 보건행정과는 전년 대비 6억 6,072만 7천원 증가한 50억 6,6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15.80%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행정과 신규 편성은 다음과 같음.
  - ‘건강도시 조성’ 건강도시 주민 교육 강사료  
(행사운영비) 74만원
  - ‘암조기검진사업’ 암검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만원
  -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민간위탁금) 9,600만원
  - ‘마음상담소 설치 운영’ 운영 물품 구매, 심리검사지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 ‘인력운영비(마음상담소)’ 마음상담소 시간선택임기제(라급)  
(기타직보수) 4,489만 7천원
- 주요 증액 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통합민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1,515만 8천원(89.17%) 증액으로 3,2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음.

- ‘암조기검진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암검진비 건강보험 공단 예약)를 전년도보다 9억 5,542만 5천 원(333.37%)을 증액 편성 하였음.
-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회복비(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결핵 고위험군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핵 역학조사등,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비)를 전년도보다 1,971만 2천 원(40.45%)을 증액 편성하였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민간위탁금을 전년도보다 2,233만 6천 원(60.56%)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내역은 ‘건강도시 조성’ 사무관리비(위원회 참석수당,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교육자료 및 책자)를 전년 대비 △1,510만원(△40.48%) 감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사무관리비(공단 위탁 수수료)를 전년 대비 △769만원(△91.70%) 감액 편성하였음.

## 2) 위생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위 생 과	965,270	957,406	7,864	0.82%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35,419	37,919	△2,500	△6.59%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35,419	37,919	△2,500	△6.59%
식품공중위생업신고 · 관리	21,369	21,369	0	0.00%
위생업소 지도점검	7,010	7,010	0	0.00%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6,040	8,540	△2,500	△29.27%
축 허용업소 지도점검	1,000	1,000	0	0.00%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840,281	827,541	12,740	1.54%
식품위생 관리	840,281	827,541	12,740	1.54%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29,271	29,271	0	0.00%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794,960	775,370	19,590	2.53%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16,050	22,900	△6,850	△29.91%
행정운영경비	89,570	91,946	△2,376	△2.58%
기본경비	89,570	91,946	△2,376	△2.58%

- 위생과는 전년 대비 786만 4천원 증가한 9억 6,5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3.01%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액 내역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검사 시료 폐기봉투 등 소모품)를 전년도보다 250만원(50%) 증액 편성함.
- 주요 감액 내역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기타보상금(시니어감시원 활동비)를 전년 대비 △250만원(△55.56%) 감액 편성하였음.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재료비(수산물 유상수거비)를 전년 대비 △450만원(△37.50%) 감액 편성하였음.

### 3) 건강동행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b>건강동행과</b>	<b>24,649,625</b>	<b>22,301,395</b>	<b>2,348,230</b>	<b>10.53%</b>
지역주민 건강지키기	17,840,271	15,992,974	1,847,297	11.55%
모자보건관리	6,465,013	6,409,366	55,647	0.87%
햇빛센터 운영(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121,351	120,649	702	0.58%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지원사업	26,534	27,400	△866	△3.16%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4,240	6,000	△1,760	△29.3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00	1,200	800	66.67%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2,324,315	2,224,817	99,498	4.4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53,334	86,666	△33,332	△38.4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3,332	49,666	△16,334	△32.89%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0,000	24,600	25,400	103.25%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4,000	6,660	△2,660	△39.9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83,490	424,300	△140,810	△33.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1,856,421	1,542,612	313,809	20.34%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3,344	5,344	△2,000	△37.43%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315,633	1,315,931	△298	△0.0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58,494	199,761	158,733	79.46%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3,700	6,400	△2,700	△42.19%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2,200	3,200	△1,000	△31.25%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2,000	2,000	0	0.00%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20,625	21,516	△891	△4.14%
예방접종사업	7,199,925	6,009,690	1,190,235	19.81%
자체예방접종사업	205,630	198,594	7,036	3.54%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29,232	28,248	984	3.48%
국가예방접종 실시	4,804,169	4,471,832	332,337	7.43%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	23,633	22,931	702	3.06%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137,261	1,288,085	849,176	65.93%
생활건강관리	1,994,669	1,408,477	586,192	41.62%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01,120	196,400	4,720	2.40%
금연구역운영관리	50,420	50,420	0	0.00%
건강증진사업	81,221	62,553	18,668	29.84%
영양플러스사업	274,856	269,580	5,276	1.96%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 배움터	22,000	22,000	0	0.00%
농식품 바우처 사업	681,000	0	681,000	순증
건강증진사업관리	321,270	315,045	6,225	1.98%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33,325	32,109	1,216	3.79%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39,490	228,927	10,563	4.61%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23,785	23,103	682	2.95%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	2,922	2,790	132	4.73%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2,068	1,910	158	8.27%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61,192	203,640	△142,448	△69.95%
방문보건사업	2,180,664	2,165,441	15,223	0.7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557,336	1,523,800	33,536	2.20%
국가치매치료관리비(전환사업)	90,900	96,000	△5,100	△5.31%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8,000	5,436	2,564	47.17%
재가암환자관리(전환사업)	12,000	12,000	0	0.00%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55,925	51,765	4,160	8.04%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249,731	250,100	△369	△0.15%
마을건강센터 운영	12,168	12,168	0	0.00%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194,604	214,172	△19,568	△9.14%
출산가정 지원	4,146,360	3,626,360	520,000	14.34%
건강가정지원사업	4,146,360	3,626,360	520,000	14.34%
출산장려지원사업	4,146,360	3,626,360	520,000	14.34%
행정운영경비	2,662,994	2,682,061	△19,067	△0.71%
인력운영비	2,553,784	2,561,878	△8,094	△0.32%
인력운영비(금연사업, 마포건강관리센터)	296,564	280,822	15,742	5.61%
인력운영비(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277,091	267,277	9,814	3.67%
인력운영비(서울시 방문간호사)	1,119,286	1,122,715	△3,429	△0.31%
인력운영비(통합방문간호사)	860,843	891,064	△30,221	△3.39%
기본경비	109,210	120,183	△10,973	△9.13%

- 건강동행과는 전년 대비 23억 4,823만원 증가한 246억 4,9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76.89%를 차지하고 있음.
- 건강동행과 신규 편성은 다음과 같음.
  - ‘농식품 바우처 사업’ 근무자 인건비, 출장여비, 의료가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94만 5천원  
안내문 및 리플렛 · 교육 교재 및 교구 · 물품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805만 5천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6억 3,400만원

-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만원  
 교육 소모품, 측정장비 사용료  
 (사무관리비) 1,979만 2천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성과평가 위원·수탁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협약서 제작  
 (사무관리비) 90만원
- 주요 증액 내역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보조재원) 검사비 지원을 전년도보다 1억 2,213만 3천원 (61.14%) 증액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백신비 및 시행비)를 전년 대비 8억 4,917만 6천원(65.93%) 증액 편성하였음.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사무관리비(홍보물품 및 홍보비, 센터운영 소모품)를 전년 대비 454만원(100.33%) 증액 편성하였음.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민간위탁금(후견심판 절차비용)을 전년 대비 256만 4천원(47.17%) 증액 편성하였음.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사업홍보물 제작·대상자 교육 도구 구매, 간호사 보수교육비, 방문인력 근무복,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를 전년 대비 329만 6천원(49.38%)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내역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영유아 건강검진사업)를 전년도보다 △270만원 (△42.19%)을 감액 편성하였음.

- ‘자체예방접종사업’ 공공운영비(취약계층 인플루엔자·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개별안내문 발송, 백신냉장고 수리비·긴급알림 통신비)를 전년도보다 △4,279만 9천원(△86%), 같은 사업 배상금등(예방접종 관련 손해배상금)을 △500만원(△50%)을 감액 편성하였음.
-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위탁금(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를 전년도 보다 △1억 6,564만원(△81.34%)을 감액 편성하였음.

#### 4) 의약과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b>의약과</b>	<b>1,375,327</b>	<b>1,325,479</b>	<b>49,848</b>	<b>3.76%</b>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849,681	804,259	45,422	5.65%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480,744	421,351	59,393	14.10%
아현보건지소 운영	101,760	103,626	△1,866	△1.80%
건강증진사업관리	68,000	67,000	1,000	1.49%
의료기관 관리	6,297	8,560	△2,263	△26.44%
의약품 조제·투약	2,280	3,280	△1,000	△30.49%
치아건강관리	135,473	143,382	△7,909	△5.52%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11,520	11,520	0	0.0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2,996	33,356	△20,360	△61.04%
서강보건지소운영	59,418	50,627	8,791	17.36%
건강장수센터 운영	83,000	0	83,000	순증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261,918	274,458	△12,540	△4.57%
건강검진	14,240	12,260	1,980	16.15%
검사 및 검진사업	177,508	186,728	△9,220	△4.94%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51,200	56,000	△4,800	△8.57%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6,590	16,590	0	0.00%
의약품 안전관리	2,380	2,880	△500	△17.36%
응급의료관리	107,019	108,450	△1,431	△1.32%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56,950	62,450	△5,500	△8.81%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17,319	12,000	5,319	44.33%
구민 혈혈 장려 사업	32,750	34,000	△1,250	△3.68%
행정운영경비	525,646	521,220	4,426	0.85%
인력운영비	421,787	406,770	15,017	3.69%
인력운영비(응급의료관리)	84,334	85,778	△1,444	△1.68%
인력운영비(아현보건지소 운영)	171,498	161,523	9,975	6.18%

(단위:천 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인력운영비(서강보건지소 운영)	43,828	45,132	△1,304	△2.89%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재활)	43,898	38,544	5,354	13.89%
인력운영비(의약품 안전관리)	78,229	75,793	2,436	3.21%
기본경비	103,859	114,450	△10,591	△9.25%

- 의약과는 전년 대비 4,984만 8천원, 증액편성하여 13억 7,5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4.29%를 차지하고 있음.
- 의약과 신규 편성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프로그램 교육 물품 구입,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원  
재활사업 행사 소모품비 등 (행사운영비) 149만 6천원  
강사비 (행사실비지원금) 750만원
  - ‘건강장수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16만원  
차량 임차료, 센터 운영비, 장수헬퍼 근무복, 운동 소도구, 건강관리키트, 교육자료 (사무관리비) 1,834만원  
차량 유지비(유류, 수리비, 자동차세 등), 휴대폰 요금 (사무관리비) 90만원  
장수헬퍼 활동비, 의료기관 대상자 의뢰수당 (기타보상금) 510만원  
의료소모품(란셋 등), 의약품(파스 등), 영양보조식품 (의료 및 회복비) 1,150만원

- 주요 증액 내역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 중 자산및물품 취득비(자동심장충격기 신규장비)를 전년도보다 731만 9천원(365.95%)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내역은 ‘아현보건지소 운영’ 행사운영비(취약계층 요리교실 재료비, 건강커뮤니티 사업, 요리 및 운동프로그램)를 전년도보다 △350만원(△43.75%)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의료기관 관리’ 공공운영비(e그린 우편요금)를 전년도보다 △268만 3천원(△51.40%)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사 및 검진사업’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를 전년도보다 △400만원(△44.44%)을 감액 편성하였음.
- ‘구민 헌혈 장려 사업’ 사무관리비(헌혈장려 리플릿 · 홍보물품)를 전년도 보다 △125만원(△41.67%)을 감액 편성하였음.

#### 4.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없음

#### 5.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없음

#### 6.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내용	통계목	2025년 예산액	2026년 이월액	사유
보건행정과	마음상담소 설치	시설비	140,000	125,053	마음상담소 조성 설계 용역 준공이 ‘25. 12월 초로 연도 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
		자산및물품 취득비	60,000	60,000	

## IV. 2025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1.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

####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①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② = ① + ③	비 고
	수입 ③	지출 ④	증감 ⑤ = ③ - ④		
2,217,416	191,852	600,505	△408,653	1,808,763	

#### 나. 자금운용(수입·지출)계획

##### 1)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수 입 합 계	2,409,268	2,430,263	△20,995
세외수입	141,852	145,950	△4,098
경상적세외수입	141,852	145,950	△4,098
징수교부금수입	34,400	42,900	△8,500
이자수입	107,452	103,050	4,4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67,416	2,284,313	△16,897
보전수입등	2,267,416	2,284,313	△16,897
융자금원금수입	50,000	25,000	25,000
예치금회수	2,217,416	2,259,313	△41,897

##### 2)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分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지 출 합 계	2,409,268	2,430,263	△20,995
식품의약안전	2,409,268	2,430,263	△20,995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600,505	603,695	△3,190
식품진흥활동 (식품진흥기금)	600,505	603,695	△3,190
식품진흥기금 운용	600,505	603,695	△3,190
재무활동(위생과)	1,808,763	1,826,568	△17,805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	1,808,763	1,826,568	△17,805
여유자금예치	1,808,763	1,826,568	△17,805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됨.
- 재원은 과장금수입,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전년 대비  $\triangle$ 2,099만 5천원이 감액된 바, 총 24억 926만 8천원이 편성됨.
- 세부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6억 50만 5천원으로 공공운영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위생교육 안내 우편물 발송) 및 민간이전(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은 증편성하였으나, 기타보상금은 신규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활동비 미편성 등으로  $\triangle$ 319만원 감액됨. 아울러, ‘여유자금 예치’는 전년도 대비  $\triangle$ 1,780만 5천원 감액한 18억 876만 3천원을 편성함.

## V. 검토결과

### □ 검토의견

- 2026년도 마포구 예산안 편성방향
  - 세입예산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지방세 공시지가 상승 등에 의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수수료수입은 감소하나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금의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은 감소하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세액으로 증가가 예상됨. 아울러,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은 변상금, 과태료 및 부담금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은 각각 부동산교부세 증가와 자치구일반 조정교부금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며,
  - 보조금은 국 · 시비 분담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됨.
  -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적극 반영되었음. 입법및선거관리 예산과 지방행정 · 재정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증대되었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노동 · 보훈 ·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우선 반영되었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음. 아울러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음. 예비비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음.

-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6억 3,22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478만 6천원 대비 9.65%, 17억 2,744만 1천원 증가하였음.
  - 세입 증가 요인은 주로 건강동행과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전체 국·시비보조금은 보건소 세입예산의 99.09%(194억 5,422만 6천원)로 전년 대비 9.75% 증가하였음.
  - 이를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출산장려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 지급)’,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으로 보조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 문제를 정책화하여 추진하면서 모자보건 사업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보건소 추진 사업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추진하고 있어 국·시비보조금 비율이 높음. 주로 건강동행과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적 움직임은 구민의 보건복지 욕구를 증가시키지만 사업은 의존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원 감소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향후에는 구민 수요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로 구분되며, 전년 대비  $\triangle 0.21\%$ ,  $\triangle 378$ 만원 감소되었음. 진료비 등 각종 수수료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의약과의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가 전년 대비 증가함.
- 202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0억 5,65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9억 8,985만 8천원 대비 10.58%, 30억 6,6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음. 보건소 4개과 모두 증액 편성[보건행정과(6억 6,072만 7천원), 위생과(786만 4천원), 건강동행과(23억 4,823만원), 의약과(4,984만 8천원)]하여 보건의료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보건행정과 ‘통합민원서비스 사업’은 구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2026년도 예산은 1억 3,366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421만 6천원, 비율로는 9.6% 정도 감액된 상태임. 실제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구조가 조금 다르게 인건비가 늘어남.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1개월 수준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다 보니, 기본급은 물론 생활임금보전수당, 4대 보험료 등이 실제 근무일수에 맞게 반영되면서 약 1,500만원 이상 증가하였음. 반면, 자산취득비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25년도 키오스크 도입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임.
  - ‘건강도시 조성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666만원으로, 전년도 1,405만원 대비  $\triangle 739$ 만원( $\triangle 52.60\%$ ) 감액되었음. 이는 전년도까지 편성되었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국외연수비 및 관련 교육비가 전액 미반영된 것이 주된 요인임. 반면, 2026년에는 주민 대상 건강도시 교육강사료 74만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사업의 초점이 공무원 연수 중심에서 지역 주민 대상 교육·참여 확대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분담 구조로 총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800만원(△25.33%) 감액되었음. 전액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예탁금)”로 편성된 사업으로, 보건소는 공단에 예탁금을 납부한 뒤 대상자를 심사·선정하고, 최종 의료비 지급은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암조기검진사업’ 예산은 12억 5,752만 5천원[국비(기금보조금) 30% : 시비 35% : 구비 35%]으로 전년 3억 60만 원 대비 무려 9억 5,692만 5천원 증가(318.34%)한 대규모 증액 사업임. 해당사업 또한 보건소가 사업비를 예탁하고 공단이 암 검진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예탁 위탁금이 2억 8,660만원에서 12억 4,202만 5천원으로 9억 5,542만 5천원(333.37%) 증가한 것이 전체 증액의 핵심 요인임. 또한 홍보물 제작비(100만원) 신설 등 수검률 제고를 위한 운영경비도 추가되었음.
-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5,000만원 대비 △7,000만원(△28%) 감액되었음. 전액 암환자 의료 및 회복비로 구성된 단일 지원사업이며, 이번 감액은 시·구 부담금 축소에 따른 조정 결과로 판단됨. 다만 암조기검진사업이 대폭 확대된 것과 달리, 치료 단계의 의료비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로, 고액

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중증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예산이 2억 2,995만 5천원으로, 전년 2억 1,333만 3천원 대비 1,662만 2천원(7.79%) 증액되었음. 일반운영비는 838만 6천원에서 69만 6천원으로 △769만원(△91.70%) 대폭 감액 되었는데, 이는 2025년에 편성되었던 결핵 예방 홍보물 제작비(약 800만원)가 삭제되고 공단 위탁 수수료만 남은 영향임. 민간이전(의료 및 회복비)은 4,872만 7천원에서 6,843만 9천원으로 1,971만 2천원(40.45%) 증액되어, 입원명령 환자 지원, 결핵 고위험군·잠복 결핵 검진, 역학조사·가족접촉자 조사, 결핵검사·진단비 등 직접 의료·검진 지원 항목이 강화된 구조로 바뀜. 한편 2025년에 편성 됐던 가족접촉자 검진비 공기관 위탁(자치단체등이전 836만원)은 2026년에 전액 삭제(△100%)되어 사업 방식이 위탁검사에서 보건소·의료기관 직접 지원 중심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됨.
-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은 2,411만 2천원으로, 전년 4,739만 2천원 대비 △2,328만원(△49.12%) 대폭 감액되었음. 총액 감소의 핵심 요인은 2025년에만 편성되었던 ‘비상방역대책 상황실 냉난방시설 설치비’ △2,253만 2천원이 2026년에는 전액 미편성(시설비 100% 감액)된 데 있으며, 경상적 운영 위주 구조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됨.
- ‘정신보건사업’은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61만원 감액 편성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이 8억 8,771만원에서 8억 5,810만원으로 △2,961만원

(△3.34%) 줄어든 것이 요인임. 이는 센터 운영비 산정 시 인건비·운영비 구조를 재조정하고,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인원·단가 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구민 정신건강 복지 차원의 사업 추진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나, 대부분 매칭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아울러, 상기 사업의 위탁업체인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자살예방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의 예산은民間 위탁금으로 센터의 인력 및 운영비에 국한된 예산임.
- 현재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건소에서는 주체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전반적인 센터의 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겠음.
-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2025. 5. 8. 제정)를 근거로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운영하여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의 24시간 정신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기금) 50%, 구비 50%로民間위탁금 9,6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마음상담소 설치 운영’은 서울시 공모사업 「2025년 자치구 마음 상담소 설치」 선정에 따라, 450만원(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이 편성된 사업이며, 별도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상담인력 인건비 4,489만 7천원이 추가 반영되어 있음.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고위험군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가까이에 ‘문턱이 낮은’ 상담 거점을 마련 하려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편성으로 판단됨.
- 마음상담소 조성 설계용역은 준공 시점이 2025년 12월 초로 확정됨에 따라, 연도 내 공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 시설비 1억 4,0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이 2026년 으로 명시이월됨. 이 중 시설비는 1억 2,505만 3천원으로 조정되어 이월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액이 이월됨.
- 위생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임. 예산은 604만원으로 전년도 854만원 대비 △29.27% 감액 되었는데, 전년도에 포함되었던 ‘식문화 개선 지원(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250만원)이 2026년도 예산에는 전액 미편성이 감액 요인임.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증가분은 민간위탁금

으로, 7억 7,407만원에서 7억 9,436만원으로 2,029만원(2.62%) 증가한 것이 요인임. 이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7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되고, 근로자 처우개선 인원 증가(12명 → 14명)로 처우개선비의 확대가 반영된 결과임.

-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사업 예산 편성액은 1,605만원으로 전년도 2,290만원 대비 △685만원(△29.91%)의 감액이 이루어졌음. 감액의 가장 큰 요인은 재료비가 1,2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450만원(△37.5%) 감액된 것이며, 이는 방사능 검사용 수산물 유상수거 건수가 400건에서 250건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일반보전금(기타보상금)이 1,04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260만원(△25%) 감액되었는데, 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횟수 축소(104회 → 78회)가 반영된 결과임.
- 건강동행과 ‘햇빛센터 운영(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현 보건소 2층을 ‘햇빛센터’로 설치하여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를 전년 대비 70만 2,000원을 소폭 증액한 1억 2,135만 1,000원을 편성함.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120만원 대비 80만원(66.67%)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집행되는 의료비 지원이 금액이 증가된 것임.

-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및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 시비 매칭 사업(시 65% : 구 35%)임. 2026년도 예산은 23억 2,431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9,949만 8천원(4.47%) 증가함.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국비(기금보조금 30% : 시비 35% : 구비 35%)]으로, 전년 대비 매칭 사업 가내시액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3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함.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부모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62-1(임산과 출산 맞춤형 지원)로 확정되어 2015년 10월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임.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에 필수적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산모의 질병·사망·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비용 지급을 내용으로 하며 전년 대비 △1억 4,081만원을 감액한 2억 8,349만원을 편성하였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는 시비 매칭 사업(시비 75% : 구비 25%)임. 산후도우미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자 사회보장 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고 있음. 상기 사업은 2006년 4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매칭 사업 가내시액 증가로 3억 1,380만 9천원 (20.34%)를 증액하였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 등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기본방향」 발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3.3.28.)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이번 예산에는 3억 5,849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873만 3천원(79.46%)을 증액함.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00%(시비 50% : 구비 50%), 검사비(국비 30% : 시비 35% : 구비 35%)가 전년 대비 61.14% 증액임. 해당 사업은 올 상반기에 조기 사업비 소진으로 검사를 신청하고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도 추가 재원이 편성될 정도로 수요가 높아 증액은 불가피하면서도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사업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한 현실적 예산 편성으로, 가임기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자체예방접종사업’은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 취약계층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장티푸스, 대상포진, 백일해 등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03만 6,000원 감액한 2억 563만원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매칭 사업(국비 30% : 시비 35% : 구비 35%)임. 전년 대비 매칭 사업 가내시액 증가로 백신구매비 및 시행비 8억 4,917만 6천원을 증액한 21억 3,726만 1,000원을 편성함.
-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농식품 바우처)을 월 단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6억 8,1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국가·시·구 분담률(국비 30% : 시비 35%: 구비 35%)에 따라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비 대부분(6억 3,400만 원, 93.14%)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바우처 지급액 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핵심을 차지함을 의미함.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은 저소득 중증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편성 예산은 800만원으로, 전년도 543만 6천원 대비 256만 4천원(47.17%) 증액됨. 예산 전액이 민간위탁금(후견심판 절차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 심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 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재정투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예산이 전적으로 절차비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후견인 활동비·사례관리비 등 실제 활동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중증치매노인의 급속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후견 수요 증가를 대비한 재정 계획 마련이 요구됨.

- 의약과 ‘아현보건지소 운영’ 예산은 1억 176만원으로 전년도 1억 362만 6천원 대비 △186만 6천원(△1.80%)이 소폭 감액됨.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는 3,336만원으로 전년 3,882만 6,000원보다 △546만 6,000원(△14.08%) 감액되었는데, 그 중 공공운영비(공공요금 · 차량유지비 등)와 행사운영비(요리교실 · 건강커뮤니티 등) 각각 950만원, 450만원으로 조정되는 등 시설 유지 · 운영성 경비는 전반적으로 절감됨. 반면, 강사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은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강사비가 신규 편성되는 등 5,790만원으로 520만원 증액(9.87%)됨.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서강보건지소를 거점으로 지역사회 뇌병변 및 지체 등 법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3,335만 6천원 대비 △2,036만원(△61.04%) 감액되어 1,299만 6천원이 편성됨. 해당 사업은 ‘서강보건지소 운영’ 사업 내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예산(운영물품 구입 355만원, 재활협의체 수당 240만원, 행사운영비 일부 등)이 분리 편성되어 있어 사업 운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건강장수센터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강보건지소를 사업위치로 신규 편성된 사업임. 예산은 8,300만원으로 세부 구성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16만원, 차량임차료 · 운영물품 · 운동 소도구 · 건강관리키트 · 홍보물 등 일반

운영비 1,924만원, 장수헬퍼 활동비 및 의료기관 의뢰 수당 등 기타보상금 510만원, 란셋·파스·영양보조식품 등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 1,150만원 등임.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국비 50% : 시비 30% : 구비 20%)으로 예산은 전년도 1,200만원 대비 531만 9천원 (44.33%) 증액되어 1,731만 9천원이 편성됨.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에서 931만 9천원으로 731만 9천원 (365.95%) 증액된 것이 특징임.
- 보건소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었으며,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라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보건소 예산은 타 부서에 비해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에 따른 의무적 구비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임. 이러한 구조는 구 재정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한 자체 사업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보건소 사업 상당수가 법정·의무사업이라는 이유로 관성적 편성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 심리 상담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은 성과 자료 없이 예산이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아울러 기간제 및 위탁 인력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상시업무까지 포함하여 중장기적 인력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인력·조직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더욱 가속되고 있음. 국·시비 기준 보조율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보조금 지원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어 국가·서울시 공모사업 및 매칭사업 추진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더불어 현재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이 지방이양 또는 기초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책 변화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분담비율 인하 요구 및 타당성이 낮은 매칭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전환 요구 등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아울러 다양한 보건사업이 실제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단편적 홍보물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부서 간 통합적 홍보 전략을 구축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홍보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을 강화하고 구민의 식품영양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과징금수입,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계획이 △2,099만 5천원이 감액되어 24억 926만 8천원이 편성됨.

- ‘식품진흥기금 운용’ 사업은 6억 50만 5천원으로 공공운영비(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위생교육 안내 우편물 발송)와 민간 이전(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은 증편성하였으나, 기타보상금은 신규 식품점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활동비 미편성으로 △319만원 감액됨.
- 융자금 대여 사업은 시설개선자금 명목 융자로 1억 8,000만원(3,000만원 × 6개소),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로 2억 5,000만원(5,000만원 × 5개소), 화장실개선자금 융자로 2,000원(1,000만원 × 2개소)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작년과 지출예산 편성이 동일한 내용임.
- 예산과 별도로 조성되는 기금의 경우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며 재정통제가 엄격하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반회계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음. 특히 사업성기금은 민간이전경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집행된 경우 선심성 지출 여부, 융자성기금은 기금 융자에 대한 회수 여부 등 사후관리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sup>3)</su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신준호
주무관	김자영

3) 양지숙(20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위험요인 분석:기금 감사 및 성과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